

I 자조금제도의 주요원칙과 축산자조금 개선대책

1. 자조금제도의 주요원칙

자조금사업이 해마다 확대되어 감에 따라 축산과 원예, 품목과 품목간의 상황차이에서 오는 자조금원칙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06년 2월 현재 자조금제도의 주요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아래에 다섯 가지 요점을 간략히 정리, 제시한다.

1) 산업과 정부의 의법 공동프로그램

- (1) 산업 – 발의, 부담, 운영 : 프로그램의 주관(주인의식과 책임)
- (2) 정부 – 지도, 감독, 자금지원 : 프로그램의 협조(지도, 감독)

2) 품목별 전 산업의 자구대책

- (1) 전 산업생산자의 참여에 의한 농민자구, 자조 사업
- (2) 기존산업단체(협회, 농협 등)와는 별도의 공동 조직 및 독자사업

3) 소비촉진 관련사업에 국한

- (1) 조사와 연구 – 사업기반 조성 및 개선방안 강구
- (2) 정보와 교육 – 실사구시 및 정확한 상황 전달
- (3) 홍보와 광고 – 대중매체 이용 및 소비촉진 권장

4) 수혜자/수익자의 동의와 협력

- (1) 직접수혜자/생산자 – 합의(투표) : 납입의무 실현
- (2) 간접수혜자/연관산업 – 협조(수납) : 법정의무 준수

5) 부담자 결의로 개폐

- (1) 찬반 투표로 존속여부 결정 – 품목별 부담농민의 결의에 따름
- (2) 한시적 성격의 소비관련 활동 – 결과가 미흡하면 프로그램 종결

2. 축산자조금 개선대책

1) 현행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골격 개정 사항

- (1) 제1조(목적) : 이 법은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

조활동을 통하여…….”의 축산단체를 축산 업자로 변경

- 사유 :**
1. 품목별 자조금은 그 “품목산업” 전체의 자조금이지 산업 내의 특정조직인 축산단체(협회와 농협중앙회)의 자조금이 아님.
 2. 목적에서부터 특정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단체간 이해상충으로 원활한 운영이 곤란함.
 3. 현행법은 축산단체에 정부지원금 보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축산업자(생산자)로 바꾸어 그 대표기구인 관리위원회에 보조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됨.

※ 그러나 대의원선거의 편의상 대의원회 구성까지의 절차는 현행대로 축산단체가 주관해도 무방함.

(2) 제9조(대의원회) : 기능강화

사유 : 1. 대의원회는 제1조(목적)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축산업자 대표의 최고 회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축산단체의 자문/보조 성격으로 약화되어 있음.

2. 따라서 대의원회 기능을 아래와 같이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축산업자 대표의 결의기구로 만듬.

- ① 자조금 설치
- ② 의무자조금 및 거출비율 결정
- ③ 결산 및 계획의 승인
- ④ 관리위원회 선출
- ⑤ 사업계속 여부 결정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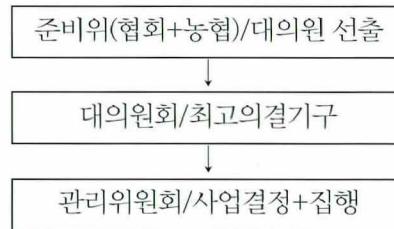
(3) 제14조(자조금의 운용) : 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운용까지 전담하는 독립기구화/법인화 체계로 변경.

사유 : 1. 자조금은 대의원회가 산업전체의 의사결정 기구이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대의원회가 선출하고 기타 공공성 위원으로 위촉,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타당함.

2. 현행과 같이 축산단체를 통하여(제1조)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설치하고(제3조) 대의원회의 형식을 거쳐 다시 축산단체가 운영하면(제14조) 대표성, 집단이기성, 계속성, 효율성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함.

제3조(설치) 및 위 2), 3)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제18조(지도, 감독) : 기능 강화

사유 : 1. 의법 자조금은 농민발의, 참여를 전제로 하나 그 행정은 정부 책임임.

2. 따라서 정부는 자조금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규정(orders and regulations), 원칙과 지침(principals and guide lines)을 만들어 법준수(compliance)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3. 정부대응자금의 지원에 대한 관리(supervise)책임이기도 함.

(5) 법 전반 고려사항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모법형식으로 재구성하고, 품목마다 그 특성에 맞게 하위법규로 제정하여 신축성 있는 시행을 기도 – 품목에 따라 수입

농산물 관계도 취급.

2) 자조금관련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강화

- (1) 자조금제도는 협동조합처럼 다수 농민 상대이고 관련부문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2) 특히 농민, 대의원, 관리위원, 공직자, 소비자 등과 농업관련 2, 3차 산업 및 학계, 연구계, 언론계 인사들에게 자조금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 자조금은 “스스로 돋는 자금”이라 하여 수년 전에 일본 수출 농산물 관련 자방정부, 농협, 무역상, 생산자들이 기금을 만들어 “자조금 사업”이란 명목 하에 생산과 유통개선, 수출촉진, 수급조정, 가격지지, 소득보장 등에 사용하기로 했을 정도로 자조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3) 품목내 기존 단체간의 기능정립 체계구축

- (1) 자조금은 해당산업전체의 프로그램인데도 기존단체(축산단체)가 기득권적 집단 이기 행태에서 자조금의 본질을 왜곡하기 쉽다.
- (2) 예를 들어 품목협회는 그 산업의 정치, 사회조직으로 산업의 장단기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농정활동, 전국대회, 전람회, 친목도모 등 회원의 공동과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고, 협동조합은 경제조직으로 해당산업의 농장/생산 - 공장/가공 - 시장/유통의 삼장통합(三場統合)에 의한 경영효율화를 획책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다.
- (3) 그러므로 이 두 조직은 서로 자조금사업의 주역 또는 실세가 되고자 하지 말고 그 구성원 농민전체의 입장에 서서 일해야 한다.

4) 자조금제도 발전연구의 전문화

- (1) 자조금제도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성, 사업효율을 중시하는 경제성, 그리고 관련인사 간의 유대가 필요한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 (2) 당장 수납금이 많이 모였다 하여 소비홍보에만 과용한다던가, 우리가 낸 자금인 만큼 우리 마음대로 쓴다던가, 심지어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고 우리끼리 운영하자던가 하는 무책임한 자율만능, 또는 가격하락이나 불만농민, 수납기관의 비협조 등의 난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조금제도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 (3) 이러한 초창기의 제도획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품목사업, 교육프로그램, 평가방법, 외국사례, 법체계연구, 나아가 한국형 자조금제도 개발 연구 등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 인식과 재원조달의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5) 축산자조금단체 협의회 결성, 운영

축산 자조금의 품목별 동질성과 이질성, 나아가 경쟁성에 대한 입지를 상호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통사항(대정부, 대관련부문과의 관계 등)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조금단체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축산자조금은 원예사업과 쌀 자조금 시도에도 좋은 벤치마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 자조금사업발전대책. (사) 한국자조금연구원]